

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처분
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
「의료법」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‘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’를 우편(등기)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,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**2026.10.15.(목)까지 의견을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라며, **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,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**임을 알려드립니다.

2026년 9월 7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공 시 송 달 공 고

- 1. 제 목
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- 2. 근 거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,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
- 3. 공고 대상자 및 내역

행정처분 사전통지서							
처분제목 (예정)	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처분						
대상자	성명 (주민번호)	노수림(960418-2)		자격번호	간호조무사 제58****호		
	주소	전라남도 목포시					
처분내용 (예정)	자격정지15일		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○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- 간호조무사 노수림은 ****병원에 근무하면서 2021.12.30.경부터 2022.4.15.경까지 허위 환자인 나** 외 6명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,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 처럼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음.						
사법처리결과	○ 기소유예(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, 2025.11.10., 2025형제9340)						
처분관련 법적근거	○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○ 구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(별표) 행정처분기준(보건복지부령 제773호, 2020.12.31.) 1. 공통기준 라.1), 마. 및 2. 개별기준 가.15)						
주의사항	○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(국내·외 의료봉사 포함) 수행 불가						
의견제출	제출처	기관명	보건복지부	부서명	의료인력정책과	담당자 전화번호	044-202-1728
		주소	(3011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,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			팩스번호	044-202-3925

※ **주의사항** ※

-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관련 당사자는 2026.10.15.(목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,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,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 끝.